거제시 공고 제2024-763호

2024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거제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4. 1.

거 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4. 2월 ~ 11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공고기간** : **2024. 4. 1.(월) ~ 4. 19.(금)** [18일]

○ **접수기간** : **2024. 4. 8.(월) ~ 4. 19.(금)** 18:00 [11일]

○ **지원규모** : **청년 61명**

○ **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내용** :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생애 1회 지원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19~39세 : 1984~2005년(1984.1.1. ~ 2005.12.31.) 출생

② 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참고]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29,000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소득조회 및 확인방법** : 건강보험료 가입여부로 판단

구 분	소득이 있는 미혼청년 *(직장인, 자영업 등)	소득이 없는 미혼청년 **(학생, 무직자 등)	기혼인 청년
소득조회대상	신청인(청년)	부양자(부모)	신청인(청년), 배우자
소득조회 가구원수 산정	1인	신청인(청년) + 부양자(부모) + 피부양자로 등록된 소득이 없는 미혼 형제자매	신청인(청년) + 배우자 + 자녀
제출서류	1.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3.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이 있는 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이 없는 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청년 소득이 월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직장(지역)가입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시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인정(아르바이트, 임시근로는 소득 미인증)

○ **제외대상 :** 다음 제외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시행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LH, 경남개발공사, 지자체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은 사람 등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⑨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거제시청(https://www.geoje.go.kr) > 소통참여 > 시정뉴스 > 고시/공고

- 제출방법

①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가능

*접 수 처 :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방문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 제출서류 ※세부 내용 붙임2 참조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자격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4. 추진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선정 통보 (SMS 등)	⇨	월세 지급	↔	사후관리
'24. 4.		'24. 4. ~ 5.		'24. 5월 중		'24. 5. ~ 12. (2~11월분 지급)		'24. 5. ~ 12.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

-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 낮은 순으로 61명 최종 선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

*참여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대비, 선정 인원의 20%를 예비 참여자로 선정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 후순위 선정**

5. 유의사항

○ 본 공고 대상인 **2024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202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원사업 비교

구 분	지원금액 (월 최대)	지원기간	신청대상	가구소득	비고
경상남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5만원**	**10개월**	19세 ~39세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 150% 이하	**'21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 가능**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20만원**	**12개월**	19세 ~34세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는 중복지원 불가능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22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부터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5일(예정)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를 제출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 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www.geoje.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거제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팀(☎055-639-410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